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9. 10. 2.
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19년 9월 19일

나. 발 의 자: 장순원 의원 외 3명

다. 회부일자: 2019년 9월 24일

라. 상정일자: 제21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(2019. 9. 27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장순원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해 온 착한가격업소 선정을 위한 지정 기준·절차·요건 및 관리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착한가격업소 제도 운영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추진코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.(안 제1조 및 안 제2조)
-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을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‘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’을 참조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.(안 제3조)
- 지원사업은 착한가격업소 지정표지판 교부, 고객편의 증진 및 위생수준

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등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내용을 정함.
(안 제5조)

-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점검 및 외부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6조)
-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 및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에 포상 근거를 마련함.(안 제8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임경태)

- 본 조례안은 소비자 물가안정 도모와 물가인상 억제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‘착한가격업소’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,
- 주요내용으로는,
 -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,
 - 안 제2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의 용어의 정의를 하였으며,
 - 안 제3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참조하여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,
 - 안 제4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, ‘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’ 지정 운영 등 구청장의 역할을 규정하였으며,
 - 안 제5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표지판 교부, 종량제봉투 지원, 소모품 지원 등을 규정하였으며,
 -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이 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외부공개가 필요한 사항은 영등포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도록 규정하였으며,
 - 안 제8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근거 규

정을 두었으며,

- 안 제9조에서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○ 검토결과,

-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2011년부터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 지정된 우리구 31개소의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보다 내실 있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, 향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및 지역 내 소비자 물가 안정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이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장순원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4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9월 일

발의자 : 장순원 의원 외 3명

1. 제안이유

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해 온 착한가격업소 선정을 위한 지정기준·절차·요건 및 관리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착한가격업소 제도 운영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추진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)

나.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을 위한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 “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”을 참조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(안 제3조)

다. 지원사업은 착한가격업소 지정표지판 교부, 고객편의 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등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내용을 정함(안 제5조)

라.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점검 및 외부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
마.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 및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에 포상 근거를 마련함(안 제8조)

3. 제정안 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 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

-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집행

다. 입법예고 (2019. 9. 10 . ~ 9. 16.) 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,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“착한가격업소”란 외식업, 이·미용업,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·품질·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.

제3조(지정 및 취소)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정기준을 참조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
제4조(이용활성화 등)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“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”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지원)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“착한가격업소” 지정 표지판 교부

2. 종량제봉투 지원
3.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
4. 소규모 시설환경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
5. 그 밖에 구청장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운영현황 점검 등)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.

제7조(영업자의 협조)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해 구청장에게 협조하여야 한다.

제8조(포상)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에게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.